르엘 대치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5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소유자(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5.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일반/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11월 11일(월요일)	11월 12일(화요일)	11월 13일(수요일)	11월 20일(수요일)	11월 22일(금요일) ~ 11월 28일(목요일)	12월 2일(월요일) ~ 12월 4일(수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 청약신청자격 서류 (10:00 ~ 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8188호(2019.10.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6개동, 총 273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220세대, 임대주택 22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1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분양	비고
민영주택	2019000892-01	055.9558T	55T	55.9558	19.6396	75.5954	55.8992	131.4946	35.3317	1	
	2019000892-02	059.9540T	59T	59.9540	20.2856	80.2396	59.8934	140.1330	37.5023	4	
	2019000892-03	077.9767T	77T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1	
	2019000892-04	059.9972	59	59.9972	20.2605	80.2577	59.9364	140.1941	37.5108	15	
	2019000892-05	077.9767A	77A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6	
	2019000892-06	077.9769B	77B	77.9769	25.6107	103.5876	77.8982	181.4858	48.4147	4	
합계										3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되어 단수정리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 세대)

주택형(타입)	동(라인)	층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계약후 30일내	중도금 1회(10%) 2020.03.11	2회(10%) 2020.06.11	3회(10%) 2020.09.11	4회(10%) 2020.12.11	5회(10%) 2021.03.11	6회(10%) 2021.06.11	잔금(20%) 입주지정일
55.9558T 55T	101동(2호)	TH층	1	759,037	364,963	1,124,0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224,800
59.9540T 59T	102동(6호) 103동(1,2,3호)	TH층	4	806,308	387,692	1,194,0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238,800
77.9767T 77T	103동(4호)	TH층	1	1,081,155	519,845	1,601,0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320,200
59.9972 59	101동(1,3,4,5호) 102동(1,2,3,4호) 103동(5호)	1층	9	774,569	372,431	1,147,0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229,400
		2층	5	782,673	376,327	1,159,0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231,800
	104동(1호)	1층	1	778,621	374,379	1,153,0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230,600
77.9767A 77A	101동(2호) 102동(5호) 103동(6호) 104동(2호)	1층	4	983,912	473,088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2층	2	994,042	477,958	1,472,0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294,400
77.9769B 77B	102동(6호) 103동(1,2,3호)	1층	4	983,912	473,088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경우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이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이상 신청하여 2인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며,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가점제 미당첨 포함)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신청 시)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 중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이 불가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내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19.11.11. (월요일)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원칙 •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19.11.12. (화요일)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19.11.13. (수요일) (08:00 ~ 17:3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다음 순위 접수 불가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 순위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KB국민은행 제외) – 일반공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
• PC 청약시(일반공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PC 청약시(일반공급)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모바일 청약시(일반공급)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재건 – 신청 」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 기재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주택청약 가입은행에 방문 접수(창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서류는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본인의 경우 변경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되고 있으니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내용의 정확성을 인지한 뒤 영업점 및 신청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
※ 본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순위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주택형의 경우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한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 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9.11.20. (수요일)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금융결제원(全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1.20. (수요일) ~ 2019.11.29. (금요일) (10일간)	
인터넷		• PC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 당첨조회 • 모바일 : APT2you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PC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인터넷청약신청 바로가기(주택청약) → 당첨확인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전화(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9.11.20. (수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일반공급)	2019.11.22.(금요일) ~ 11.28.(목요일) 7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5)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성명,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금융결제원 발급)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12.02.(월요일) ~ 12.04.(수요일)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예약접수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추첨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필수	해당자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차 / 계약금 2차	우리은행	1005-503-807693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 롯데건설(주)
중도금 / 잔금	우리은행	1005-503-809982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조합, 롯데건설(주)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전체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1년 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작은도서관 등

■ 당사업지 지하주차장은 지하2, 3층으로 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높이는 지하2층은 2.7m, 지하3층은 2.3m 미만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5T	59T	77T	59	77A	77B
발코니 확장 금액		18,000,000	19,000,000	21,000,000	19,000,000	21,000,000	21,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800,000	1,900,000	2,100,000	1,900,000	2,100,000	2,10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6,200,000	17,100,000	18,900,000	17,100,000	18,900,000	18,900,000

■ 기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1(부분) 설치위치	선택1(부분) 금액	선택2(전실) 설치위치	선택2(전실) 금액	제조사
55T	거실+안방(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실내기 3대)	5,500,000	LG전자
59T	거실+안방(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실내기 3대)	5,500,000	
77T	거실+안방(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실내기 4대)	6,500,000	
59	거실+안방(실내기 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실내기 4대)	6,500,000	
77A	거실+안방(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실내기 4대)	6,500,000	
77B	거실+안방(실내기 2대)	4,5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실내기 4대)	6,500,000	

■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제조사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LG	전평형	6,800,000	S711S24B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59T	1,200,000	K221PR14BR/L
빌트인 김치냉장고 + 수납특화	LG	55T, 77T, 59, 77A, 77B	1,700,000	K221PR14BR/L

■ 마감재, 가구 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현관	3연동 중문	55T, 77T, 59, 77A, 77B	1,600,000	
바닥	전실 원목마루 또는 안방, 침실 원목마루 + 거실, 복도, 주방 타일	55T, 59T, 59	4,000,000	
		77T, 77A, 77B	5,500,000	
주방	외산 주방가구	전타입	18,000,000	
침실	안방 붙박이장	55T	4,000,000	
		59T	3,700,000	
		77T, 59	3,500,000	
		77A, 77B	3,600,000	
	침실3 붙박이장	77T, 59, 77A, 77B	1,100,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277575	롯데건설(주)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77588	롯데건설(주)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마감재
■ 견본주택 / 홍보물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주변환경관련: 기부채납 공원, 기부채납 시설, 단지주변 도로, 인근단지, 구역경계 / 기타사항: 인허가,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 / 단지: 공동사항, 리모델링, 피난동선, 세대창고, 문주,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무인택배보관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 단위세대: 견본주택 및홍보물, 마감재, 공통사항, 제공품목, 가구공사, 창호공사, 전기/설비 공사, 발코니 및실외기실 / 유상옵션: 공통, 가구 및 마감재, 가전)

기타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19-101-0007700	31,497,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하므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회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고
건축감리	㈜한종합건축사사무소	1,286,271,800원	
소방/통신/전기 감리	주식회사 지에이엔씨	228,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14671-0030885)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 캐슬 주택전시관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사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하시기 바라며, 미예약 방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1811-844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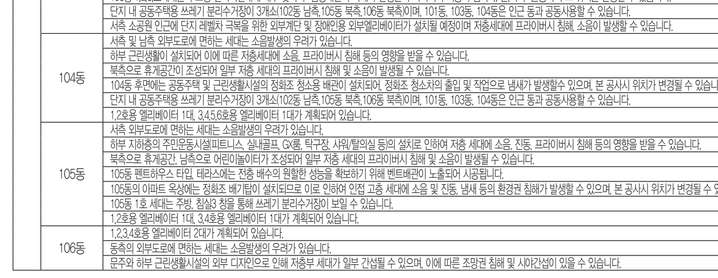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시행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LOTTE E&C

1811-8448